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61 호 2024. 7. 4.(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5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6호[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7호[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8호[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9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0호[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1호[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3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38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42호강북교육지원청)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40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41호[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승인사항 고시]…………… 3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44호[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4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45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4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4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964호[공고]…………… 4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967호[공고]…………… 4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979호[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4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990호[공고]…………… 5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를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보 등”을 “구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파괴·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를 “때에는”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제4조의3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의원 추가(제7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7조의5)
- 위탁사무 계약기간 3년 이내 및 재계약 1회로 명시(제8조제4항, 제17조 제1항)
-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제8조의2)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한 변경(제16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6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
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
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 경제문화국장

2. 지방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적 조치

(제6조 ~ 제8조, 제12조)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방법(제9조)

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공동체 공간 조성,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근거 명시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3조)

다.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제4조 ~ 제6조)

라.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제7조 ~ 제9조)

마. 실비보상, 포상(제10조 ~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 개선 수당 지급)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3조)
-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 개선 사업(제4조 ~ 제5조)
- 다.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제6조 ~ 제7조)
- 라. 표창, 시행규칙(제8조 ~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을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00분의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습비”를 “별표 2에 따라 학습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일할”을 “일 단위로”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중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습비 등 징수기준(제16조 관련)

1. 학습비

운 영 과 정	학 습 비	기준단위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1회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50,000원 이하/월	주 1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30,000원 이하/월	주 1회 기준

<비고>

-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 다. 별표에 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비고>

-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습비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회차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2/3 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1/2 이상, 2/3 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1/2 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회차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회차를 말한다.

나. "총수업회차"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회차를 말한다.

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수업료 징수기준(제26조 관련)

운영과정	수업료	기준단위	비 고
평생학습대학	60,000원 이하/월	<u>주 1회 기준</u>	

<비고>

-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강의와 관련된 재료비와 전문자격 운영으로 인한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 나. 별표에 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제17조제1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학습비 감면 : 100분의 30

-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 신설(제18조제1항 별표2)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평생교육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14조)
 -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개정
 -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추가
-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제16조제1항 별표 1, 제26조제2항 별표 3)
 - 수업시간의 기준단위는 주1회로 하고,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으로 일원화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제18조, 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장”을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제11조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학교폭력 정의(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중 관할기관 현행화(제3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제5조)

나.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제1조)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제16조제1항 별표 1, 제26조제2항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담당부서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 '24. 4. 1.)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가 배분됨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제1조)
- 나. 특별회계의 정의(제2조)
- 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제3조, 제4조)
-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3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42호:강북교육지원청)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42호:강북교육지원청)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42호:강북교육지원청)사업

나. 명칭 : 강북교육지원청사 별관 증축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3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내 용		비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8,868.00 m ²		'01. 11. 13. 울(북)고 19호 (최초 결정일)
사업시행면적	사업면적	8,868.00 m ²	
건축면적	강북교육지원청사	1,720.43 m ²	
	강북교육지원청사 별관	1,124.04 m ²	
	총 계	당초 : 1,720.43 m ² 변경 : 2,844.47 m ²	
건축연면적	강북교육지원청사	5,989.08 m ²	
	강북교육지원청사 별관	2,992.34 m ²	
	총 계	당초 : 5,682.00 m ² 변경 : 8,981.42 m 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6. 5.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사업부지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 권자	주소	
1	연암동 1223	대	8,262.00	7,168.00	울산광역시(교육감)					
2	연암동 1260-7	대	1,692.00	1,692.00	울산광역시(교육감)					
3	연암동 1260-9	대	42.00	8.00	울산광역시(교육감)					
합 계			9,996.00	8,868.00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3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6(2020. 6. 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63-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사업
 - 명 칭 : (당초)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로2-13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변경)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로2-136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변경)

구분	소로2-136호선(1공구)			소로2-136호선(2공구)			총면적(㎡)
	길이(m)	폭(m)	면적(㎡)	길이(m)	폭(m)	면적(㎡)	
도로(당초)	237.5	8.0	1,832	320.0	8.0	2,763	4,595
도로(변경)	237.5	8.0	1,832	320.0	8.0	2,520	4,35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18. 10. 4. ~ 2023. 12. 31.
 - 변 경 : 2018. 10. 4. ~ 2027. 7. 1.
-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소2-136)-전체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자		비고	소유권	편입대상 CAD	편입CAD	공시지가	보상비	
	시, 군	면	리	면적(당초)	면적(변경)	주소	성명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4	1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이00	2공구	사유지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3	23	농소면 호계리 ***	이00		사유지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	3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업00		사유지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2	22	국(농림수산부)			국유지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	1	***	김00		사유지					
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4	54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업00		사유지					
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57	15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림길 ***	김00 외 1인		사유지					
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6	36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안00		사유지					
1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10	7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이00		사유지					
1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09	150	남구 천암동 ***	이00		사유지					
1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2	3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48	14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1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7	57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	이00		사유지					
1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21	108	중산동 ***	김00		사유지					
1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3	1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신00		사유지					
1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48	10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서00		사유지					
2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계외		공유지					
2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9	1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김00 외 1인		사유지					20
2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2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20	11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김00 외 1인	사유지						
2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9	3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2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2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2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4	-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	계외	사유지						
2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0	1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7	10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2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5	5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7	
3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7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3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7	31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유지						
3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2	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이00	사유지						
3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3	23	농소면 호계리 ***	이00	사유지						
3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1	10	농소면 호계리 ***	이00	사유지						
3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3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	2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28	
3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4	33	***	박00	사유지						
3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3	12	울산광역시 북구 갯골***	조00	사유지						
3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1	81	시례리 ***	박00	사유지						
4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	63	울산광역시 농소면 호계리 ***	이00	사유지						
4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2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4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14	214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	이00	사유지						
4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7	7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윤00	사유지						
4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5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18	
4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3	2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4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	8	***	이00	사유지						
4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60	160	울산광역시		공유지						
4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13	113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	허00	사유지						
4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7	4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31	13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0	70	국토교통부		국유지						
5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8	3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7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8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3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1	4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64	164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5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8	3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5	3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4	14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1	5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42	34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6	1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9	1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1	1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5	6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6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54	154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7	7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6	3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2	2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4	34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9	4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39	23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4	24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	2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7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66	16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8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8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0	30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지						
합계				4,595	4,29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41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 승인사항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합 계		589,523,741,370	593,250,220,944	514,114,804,688	79,135,416,256
일 반 회 계		584,181,886,370	586,740,099,577	510,178,434,493	76,561,665,084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5,341,855,000	6,510,121,367	3,936,370,195	2,573,751,1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1,468,060	885,97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47,238,770	238,690,160	8,548,610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2,206,540	2,918,450
	주 차 장	3,123,904,000	4,285,403,577	1,724,005,435	2,561,398,142

○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589,523,741,370	608,429,693,582	593,250,220,944	520,435,530	14,659,037,108
일 반 회 계	584,181,886,370	601,047,773,651	586,740,099,577	390,615,740	13,917,058,334
기타특별회계	5,341,855,000	7,381,919,931	6,510,121,367	129,819,790	741,978,774

○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589,523,741,370	514,114,804,688	43,561,282,932	7,284,034,550	24,563,619,200
일 반 회 계	584,181,886,370	510,178,434,493	43,561,282,932	7,253,345,370	23,188,823,575
기타특별회계	5,341,855,000	3,936,370,195	-	30,689,180	1,374,795,625

* 보조금반납금 :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반납금

○ 결산상 잉여금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지출액)

(단위 : 원)

회 계 별	결산상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79,135,416,256	43,561,282,932	15,360,119,666	4,128,558,200	24,072,605,066	7,330,262,241	28,243,871,083
일 반 회 계	76,561,665,084	43,561,282,932	15,360,119,666	4,128,558,200	24,072,605,066	7,299,573,061	25,700,809,091
기타특별회계	2,573,751,172	-	-	-	-	30,689,180	2,543,061,992

* 보조금실제반납금 : 보조금수령액 대비 보조금반납금

○ 성과보고서

(단위 : 원)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 산 액	전 년 도 결 산 액	비 교 증 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77	150	18	117	15	514,114,804,688	511,918,619,294	2,196,185,394
기획재정국	1	15	33	5	25	3	19,485,409,330	17,081,206,120	2,404,203,210
행정지원국	1	14	26	4	21	1	87,110,923,034	88,183,877,936	△1,072,954,902
복지환경국	1	25	40	2	33	5	297,659,109,431	314,958,383,257	△17,299,273,826
안전건설국	1	17	36	6	25	5	79,150,869,605	60,108,359,449	19,042,510,156
의회사무과	1	1	3	1	2	0	2,120,896,054	1,878,945,408	241,950,646
보 건 소	1	2	4	0	4	0	18,593,089,890	20,892,496,825	△2,299,406,935
구립도서관	1	1	3	0	3	0	7,981,375,820	6,822,926,819	1,158,449,001
문화예술회관	1	2	5	0	4	1	2,013,131,524	1,992,423,480	20,708,044

○ 기금현황

(단위 : 원)

종 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8종	7,213,830,366	2,259,352,009	9,473,182,375

○ 채권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626,700,300	68,298,760	64,979,900	1,630,019,160
일 반 회 계	1,403,708,880	-	-	1,403,708,880
기 타 특 별 회 계	1,550,160	3,678,930	3,160,310	2,068,780
기 금	221,441,260	64,619,830	61,819,590	224,241,500

○ 채무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조 정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계	822,871,020,629	71,113,292,405	5,239,085,779	888,745,227,255
행 정 재 산	820,621,646,554	71,113,292,405	5,220,333,279	886,514,605,680
일 반 재 산	2,249,374,075	-	18,752,500	2,230,621,575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868	8,621,266,000	63	909,669,000	931	9,530,935,000
정 수 물 품	868	8,621,266,000	63	909,669,000	931	9,530,935,000

○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계	3	174,026,000	22,826,000	150,000,000	1,200,000
일 반 회 계	3	174,026,000	22,826,000	150,000,000	1,200,000
기타특별회계	0	-	-	-	-

○ 성인지 결산

(단위 : 개, 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89	123,445,192,810	118,804,246,879	96.2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38	106,121,484,000	103,499,498,640	97.53%
	일반회계	38	106,121,484,000	103,499,498,640	97.53%
	기타특별회계	0	-	-	-
	기금	0	-	-	-
성별영향평가 사업	소계	41	10,542,096,790	10,385,644,434	98.52%
	일반회계	40	10,270,556,790	10,115,194,754	98.49%
	기타특별회계	1	271,540,000	270,449,680	99.60%
	기금	0	-	-	-
자치단체특화 사업	소계	10	6,781,612,020	4,919,103,805	72.54%
	일반회계	9	6,778,612,020	4,916,103,805	72.52%
	기타특별회계	0	-	-	-
	기금	1	3,000,000	3,000,000	100.00%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978,602,817,537	비 용	469,893,882,228
부 채	19,667,742,774	수 익	507,137,152,288
순자산	958,935,074,763	운영차액	(37,243,270,060)

※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T.241-7303, FAX.241-8689)으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44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m ²)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제2024 -6호	울산북구청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3,500	'24. 07. 02. ~ '24. 08. 30.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 계획 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승인(신고)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신고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24.07.01.	제2024-2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3,500	'24.07.03.	'24.07.29.	물놀이장 운영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4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당수골35길 12	호계동 1041-7	2024. 7. 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964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매곡동 927-10 ○ 매곡동 927-11	노선명	○ 소2-356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12m ○ A(일시) = 21.6㎡ ○ A(계속) = 0.72㎡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967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중산동 492-2	노선명	○ 광3-3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47m ○ A(일시) = 42.3m ² ○ A(계속) = 10.34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979호

울산광역시 복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시행 '23.6.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신설(안 제6조)
 - 복구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사항 규정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맞춰 띄어쓰기 정비

3. 관계법령

- 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8

나.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우 44248)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대응팀

2) 전화 : 052)241-8935, 팩스 : 052)241-810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6.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항에 따라”를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헌혈자는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권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며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u>대가없이</u>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p> <p>2 ----- ----- --- <u>대가 없이</u> ----- ----- -----.</p>
<p>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p>	<p>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p>

<신 설>

과 같음)

③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헌혈자는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권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북구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990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송정동 1155-2	노선명	○ 중1-327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3m ○ A(일시) = 5.4m ² ○ A(계속) = 0.33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